

직장 자가 점검 매뉴얼 ⑯

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해나가는 자료의 하나로서, 직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은 우선 점검일람표라 할 수 있다. 손쉽게 이용하여 직장내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검표는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. 여기에서는 각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, 작업관리자들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연속 소개한다.

작업별 체크리스트 8

【작업방법을 중심으로 한 점검】

산

업현장에는 실제로 수많은 종류의 작업이 있다. 작업의 종류가 다르면 사용하는 기계도 달라지고, 작업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. 따라서 수많은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실제로,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작업별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는 2가지 요인에는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있다. 바꾸어 말하면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중에서 기계설비 자체의 점검에 있어서는 '정기적 자가점검지침' 등 전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래서 본 작업별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기기나 안전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적 요인, 불안전 행동의 일소를 목적으로 해서 '작업방법'을 최고 중점사항으로 두고 체크포인트를 배열하였다.

분류하여 다른 작업도 전 업종에 공통되는 것 이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주요한 작업을 선별하였다.





소음 작업 점검 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, 격리벽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에어밸브 등 배기구에 소음 장치를 달았는가 ② 금속제 수납고에 고무판을 늘어뜨려 낙하음을 경감시키고 있는가 ③ 진동하는 기계와 바닥면과의 사이에 방진재를 설치하였는가 ④ 소음원을 적절한 차음재로 둘러놓았는가 ● 소음을 발하는 사무용기기를 5대 이상, 집중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차음 및 흡음기 등을 가진 작업실을 설치해 두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저히 소음을 발하는 실내작업장에 있어서는 6개월이내마다 1회 및 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, 정기적으로 소음레벨 측정을 하고 있는가 ●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에어밸브, 배기장치 등 소음을 발하는 기계설비의 일상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		
작업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강렬한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장의 작업자에 대하여, 소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차음실 등의 문을 개방상태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않은가 ● 소음이 높은 직장(등가소음레벨 85 dB 이상)에 있는 작업자는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하고 있는가 ● 귀마개는 정결한가, 작업자의 수만큼 구비하고 있는가 ● 작업중, 배기장치의 팬이 더럽혀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어 소음을 발하고 있는 않은가 ● 작업중, 벨트커버나 뚜껑의 고정나사가 이완되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않은가 ● 작업중, 기계설비의 부착상태가 나빠서 공진 등에 의한 진동음이 발생되고 있는 않은가 ● 작업중, 기어, 축수 등의 마찰, 기름이 말라 이상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은가 		
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직장순시자를 정하고 있는가 ● 순시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지난번의 순시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가 		
건강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채용시, 배치전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6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적으로 청력관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건진은 법정항목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가 ● 건진결과를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		



진동작업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구는 핸들등만을 잡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● 핸들등은, 방지고무 등의 방진재료를 써워 공구에 달려져 있는가 ● 핸들등의 쥐는 부위는 두꺼운 연질고무 등의 방진재료로 써워져 있는 것인가 ● 실내작업인 경우에는 적절한 난방설비를 가진 휴게실을 설치해 놓았는가 ● 용수가 있는 캠내 등에 있어서 의복이 젖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복을 건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정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 있어서, 1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적으로 소음레벨 측정을 하고 있는가 ● 측정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동공구는 일상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진동공구는 6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자주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가 		
작업 방법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동업무종사자에게 진동공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가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일, 진동업무의 작업종사시간(휴식시간을 제외)은 2시간이내로 하고 있는가 ● 일연속작업시간은, 10분(내연기관을 내장한 가반식(可搬式)공구등에서는 30분)이내로 하고 있는가 ● 일연속작업 후, 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는가 ● 진동업무종사자가 한냉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,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방진보호구(연질의 두꺼운 장갑 등)를 사용하고 있는가 ●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사용하고 있는가 ● 작업개시시 및 작업종료 후에 손, 팔, 어깨, 허리 등의 운동을 주로한 체조를 하고 있는가 		
직장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개시점검, 정기점검,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직장순시자를 정하고 있는가 ● 순시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지난번의 순시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을 처리하고 있는가 		
건강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채용시, 배치전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6개월이내마다 1회(그중 1회는 동절기),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내연기관을 내장한 가반식 공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는 1년마다 1회, 동절기에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		